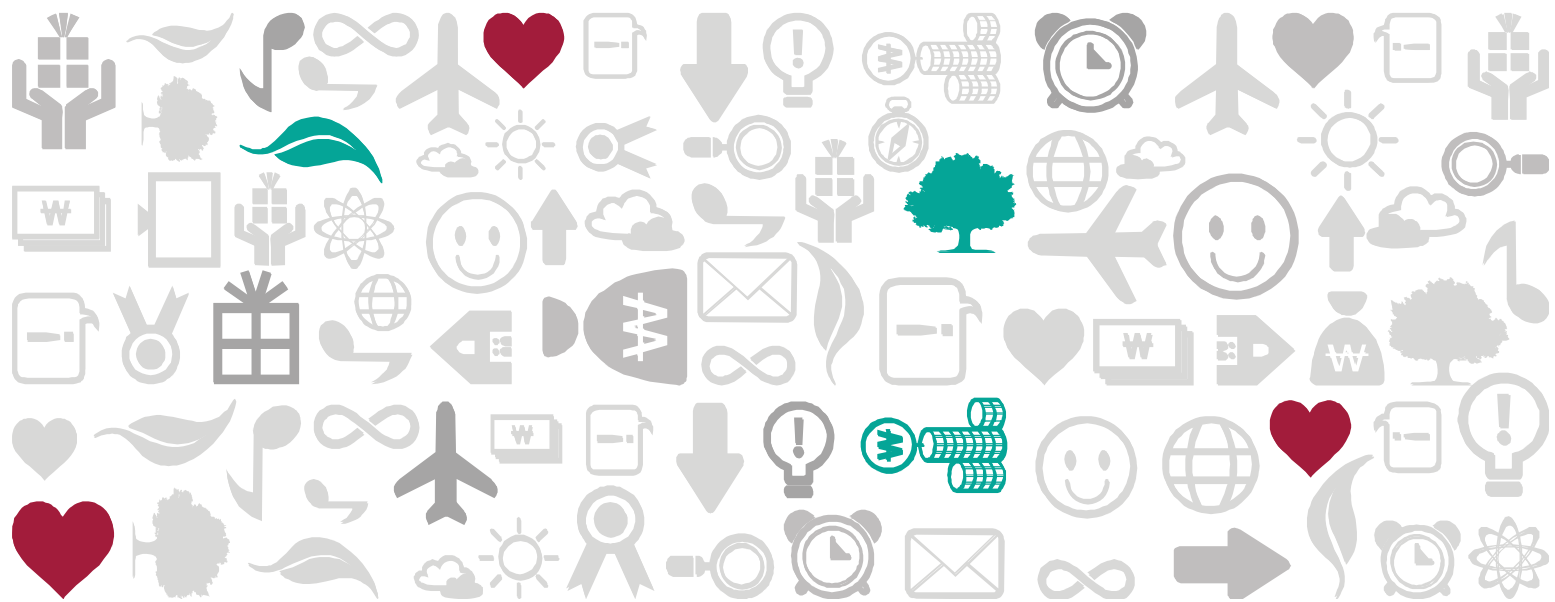


은퇴설계를 위한 하나 행복가이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국내외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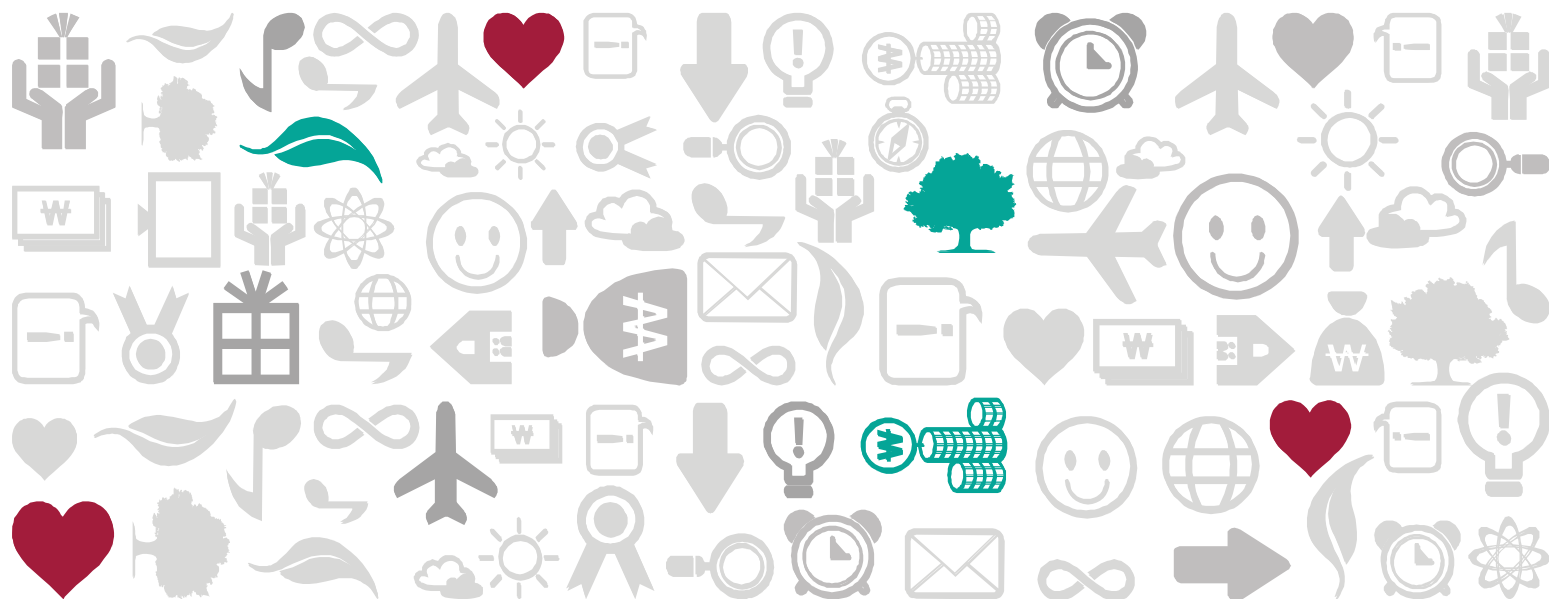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www.hanaif.re.kr





Contents

이슈 포커스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국내외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분석 및 시사점	01
노후 재무설계	자영업자 K씨, 개인연금 중심 노후 준비 자영업자 K씨, 안정 추구형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이 적합 투자상품은 변동성 장세에 대비한 상품중심 구성 9월 주식시장은 출구전략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09
국내외 단신	日, 민간 간병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고령화와 공적연금이 개인 저축에 미치는 영향 금감원,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현황 및 지급방안 추진	14
상품브리프	2013년 새롭게 변경된 변액연금보험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	20
하나 뉴스	하나은행, 행복-건강 S라인 적금 출시 등	22
연금 통계		23

“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수석연구원 오 영 선
(ohys@hanafn.com)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연금활성화 방안은 의료비 인출 기능이 추가된 연금저축 상품의 개발, 사업비 체계 및 해지환급금 개선, 1회 보험료 납입 등을 통한 실효계약 부활 등 소비자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연금활성화 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 가입률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제도 개선안이 계약 유지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

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이 20%에 불과하며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 비중도 4.5%에 그쳐 OECD 평균 33.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총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OECD 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인구 비율도 낮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연금 가입자는 20~60세 인구 중 30%일 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초,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은 국내 사적연금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연금 가입율과 유지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소득과 의료비 동시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우선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노후생활에 있어서 의료비는 큰 지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개발될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저축보험에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제공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60세 내외의 고령자는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서 고령자는 보험 계약을 하기 어렵고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가입연령을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자기부담금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고 급여와 비급여 보장금액을 차등화 하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체계 개선을 통한 가입을 제고

가입자 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금보험 등의 사업비 체계 개선, 온라인보험 사업비 판매 보수 인하 등이 고려되었다.

연금보험 등의 사업비 체계 개선안은 계약체결비용 지급 방식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그동안 연금보험의 사업비가 계약 초기에 선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즉, 고객이 보험상품 가입 이후 초기에는 납부한 보험료 중 보험설계사 수수료 등의 계약체결비용 및 보험회사의 운영비(급여, 임차료 등)와 같은 계약 관리비용이 먼저 차감된 뒤 잔여금액이 적립되다 보니 상품의 초기수익률이 낮고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연금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50% 이상을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계약체결비용을 단번에 인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비 체계 개편은 당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금보험 사업비 체계 변경에는 저축성보험이 보장성보험에 비하여 계약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설계사가 상품을 설명하는 노력을 적게 기울여도 된다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현황

(단위 : %)

	1차년	5차년	10차년	15차년	20차년	25차년	30차년
생명보험	11.12	2.07	0.51	0.14	0.11	0.09	0.07
손해보험	13.97	2.61	0.61	0.10	0.10	0.10	0.10
은행	0.77	1.19	0.92	0.81	0.81	0.81	0.81
자산운용	0.78	1.21	1.26	1.24	1.24	1.24	1.24

| 자료 : 금융위원회

아울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 상품의 40%를 차지하는 방카슈랑스 채널 상품도 사업비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보험 사업비 판매보수 인하 방안은 온라인 전용펀드 및 온라인보험의 사업비가 오프라인 채널에 비하여 낮아질 수 있도록 판매보수를 인하하고 계약체결비용을 일반채널의 50%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펀드 판매보수를 현 시점보다 10%p 낮은 50%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14개 금융회사가 대면채널의 일반 연금저축펀드를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계약체결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 전용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종합보험사가 온라인 전용보험사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납입 유예 및 계약 부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기 계약 유도

금융위원회는 연금가입자들의 장기적 계약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 연금저축의 10년 후 가입 유지율은 52.4%로, 개인연금에 실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저축성보험 · 방카슈랑스 채널사업비 개편 일정

		현행	2014	2015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분급	일반채널	30%	40%	50%
	방카슈랑스	30%	60%	70%
	온라인채널	30%	80%	100%
방카슈랑스, 온라인 계약체결비용 수준(일반채널 대비)		70%	6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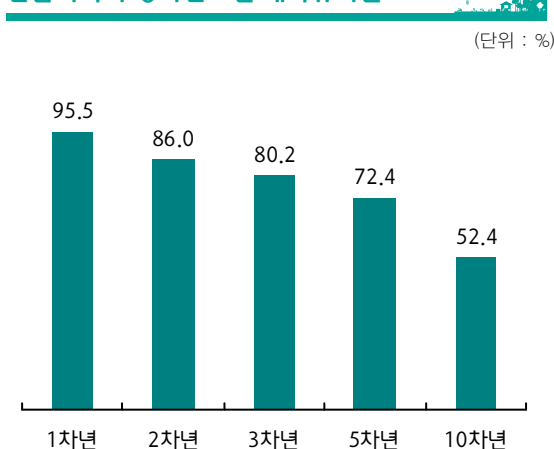
| 자료 : 금융위원회

개인연금의 장기 보유 유도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의 보험료 납입 유예 및 계약 부활제도 개선, 연금저축 계약 이전 원활화의 두 가지 안이 소개되었다.

먼저 연금저축의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의 개선안은 보험사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해온 납입유예제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납입유예기간은 계약자 신청에 의하여 1회에 1년까지 가능하며 납입유예횟수는 납입기간 중 제한적인 횟수로 정해지고 납입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계약부활제도 개선안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은 실효(失効) 상태의 보험계약을 1회차 보험료 납입을 통해 정상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계약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기능이 중지되는 실효 상태가 되어 이후 가입자가 다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하지 못했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연금저축보험의 실효상태인 계약 중에서 1년 이내에 부활한 계약 건이 3.4%(2011년 9월 말 기준)에 불과한 것은 실효를 겪은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기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계약을 결국 해지하게 된 결과를 보여준다. 계약부활제도 개선안은 실효 상태의 보험가입자들이 손쉽게 계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연금저축의 경과년도별 계약유지율



| 자료 : 금융위원회

유지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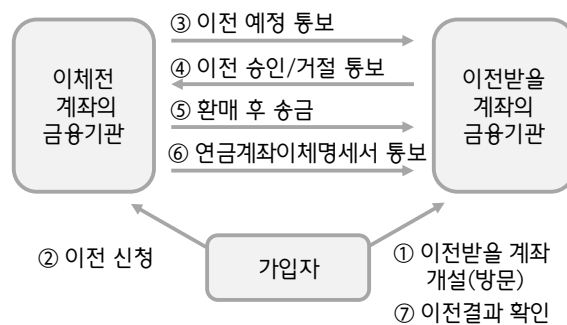
연금저축 계약 이전 원활화는 소비자들이 계약 이전시 2번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실효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소비자들이 수익률, 수수료 등의 이유로 타 상품으로 교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는 이체전 계좌의 금융기관과 이전 받을 계좌의 금융기관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나 개선안을 통해 계좌해지(이전신청)는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인들의 개인연금상품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구축 예정

개인이 연금상품에 대한 정보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노후를 설계하여 연금을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인들이 개인연금상품 및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연금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통합공시시스템을 오픈하여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들의 활용도가 낮고 세제비적격연금의 경우 공시시스템 내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절차



| 자료 : 금융위원회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방안은 올해 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비 체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납입유예, 계약부활, 계약이전 원활화 및 노후강화 연금상품은 내년도 초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단기 가입을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유지율 제고에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연금활성화 방안은 사업비 체계 개선을 통한 상품수수료 인하 및 해지환급금 개선, 1회 보험료 납입을 통한 실효 계약의 부활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개인연금 상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가입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된 의의가 있다.

저렴하고 가입연령이 확대된 노후실손의료보험 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의료비저축보험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어서 소비자의 노후 대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와 계약 부활제도가 개선된 점은 그동안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 보험계약 유지 여부를 고민해온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단,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경우 납입기간이 실효기간만큼 연장된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서 소비자들 이 이를 단기간 내에 체감하게 되는 효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상품의 초기수익률을 향상시키고 초기 해지환급금을 개선한 점도 소비자들의 상품 가입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금저축은 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생보 56%, 손보 21.6%, 은행 16.0%, 증권 6.3%) 상품의 중요 판매 채널인 설계사들의 초기 소득을 감소시키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설계사들의 개인 연금 판매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여전히 소비자들은 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2년 조사 결과) 정부의 공시자료는 참고만 할 뿐, 금융회사의 직원들을 직접 만나 상담 후에 상품 가입을 결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비대면채널을 활성화하고 연금상품의 성격과 세제혜택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도 개선안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잠재 보험고객 흡수를 위해서는 개개인이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을 줄이고 자금을 마련해야 노후가 편안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이 노후 소득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상품 구매자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부각되었으나 향후 개인연금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자도 적극적으로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게 동기요인을 제공하는 일도 중요하다. 각종 규제로 인하여 아직 개인연금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차후에는 금융회사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상품 효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분석 및 시사점

”

연구원 최 성 민
(sungmin.choi@hanafn.com)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층 보장체계의 틀만 갖춘 채 내실이 부족한 상황이다. OECD 국가간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결과, 소득대체 수단에 따라 국가별 상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

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전세계적인 이슈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와 저축, 투자, 소비 등의 위축으로 인한 국가 잠재성장률 둔화 등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에 대비하고 고령자들의 경제적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수적인데,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의 보장주체별 3층 노후소득 보장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본틀은 갖추고 있으나 내실이 없고 보장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중 국민연금 실질가입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평균 수급액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 미흡으로 인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의한 추가적인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대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OECD 국가간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연금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OECD 국가들의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결과, 연금제도에 따라 국가별 상황이 상이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성장 수준과 연금시장 성숙단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와 소득대체율을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따라서 OECD 34개국에 대해 각각의 연금제도를 공적연금¹⁾, 의무적 사적연금²⁾, 자발적 사적연금³⁾으로 분류하고 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을 평가한 OECD Pension Model을 기준으로 각국별 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분석하였다.

OECD 34개 국가들의 연금 소득대체율을 평가한 결과 평균 63.6%의 소득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공적연금, 의무적 사적연금, 자발적 사적연금 등 연금제도와 이들의 소득대체 수단여부에 따라 국가별 상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 평균은 42.2%, 공적연금과 의무적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 평균은 57.3%, 의무적 연금제도에 자발적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소득대체율 평균은 63.6%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연금만 존재하는 국가들의 소득대체율 평균은 64%, 공적연금과 의무적 사적연금을 포함한 국가들의 소득대체율 평균은 63%, 공적연금과 의무적 사적연금, 자발적 사적연금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들의 소득대체율 평균은 64%로 제도별 소득대체 여부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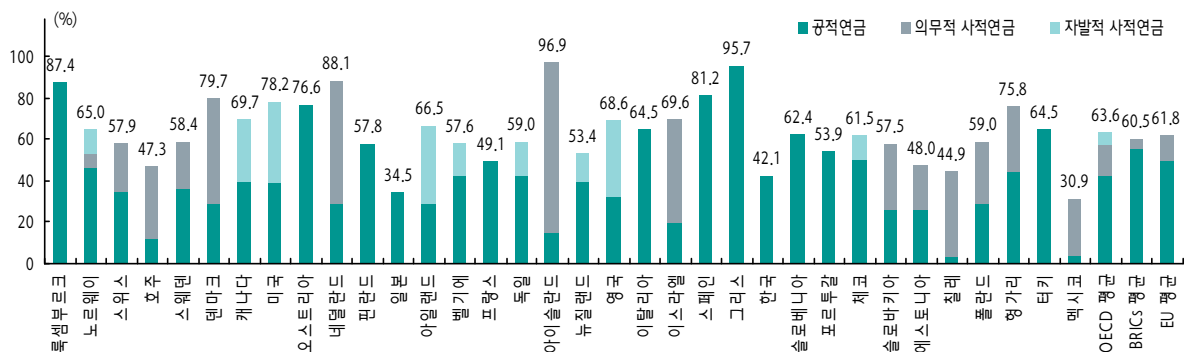
소득대체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도 간 대체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국가를 소득대체율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OECD 34개국의 소득대체율을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각 구성요소에 따른 비중을 분석한 결과, ①의무적 연금제도 중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 비중이 높은 유형, ②의무적 연금제도 중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 비중이 높은 유형, ③자발적 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높은 유형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번 유형에 해당되는 국가는 2012년 기준 1인당 GDP 1위인 룩셈부르크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터키 등의 서유럽 국가들이 포함된다. 또한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는데, 이들 중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일부 국가들은 공적연금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로 파악되었다.

OECD 34개 국가별 소득대체율



주 : 그림에 표시된 자발적 사적연금 데이터는 DC형 연금제도에 한정된 수치

자료 : OECD

주1)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써 강제 가입이 요구되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금제도(국내 기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주2) 민간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이지만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연금제도(국내 기준, 퇴직연금 DB형이 해당)

주3) 민간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으로 가입자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임의 가입하는 연금제도(국내 기준, 퇴직연금 DC형과 IRP, 개인연금 등이 해당)

②번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의무적 사적연금 제도가 있는 14개 국가 중 노르웨이를 제외한 13개 국가들로 이들 국가들은 공적연금이 부담했던 연금 소득대체율 일부를 의무적 사적연금으로 전가한 형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 곳이 대부분이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폴란드, 헝가리 등은 사적연금이 의무화된 상태이며 호주, 칠레 등은 의무적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 비중이 공적연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에 따라 총 소득대체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③번 유형에 속하는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의 영어권 국가들은 연금제도의 역사가 길고 평균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에 속한 중·고소득자의 경우 공적연금에서 받는 급부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굳이 사적연금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사적연금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국내 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제기구 권고기준으로 강화될 필요

OECD Pension Model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 총 소득대체율은 공적연금에 의해 42.1%가 보장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수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한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45~5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총 소득대체율을 70~8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25~30% 만큼의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 방안을 통해 2028년에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을 평가하면 25~3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35년 가입 기준 12.5% 수준으로 국제기구 기준인 30%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이는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소득대체 효과면에서는 여전히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 및 유지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으로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원하는 중·고소득 계층만이 중심이 되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제도 유형별 국가 비교

구분	개수	해당 국가
의무적 연금제도 중 공적연금 비중이 높은 유형	17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일본, 벨기에,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한국,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체코, 터키
의무적 연금제도 중 사적연금 비중이 높은 유형	13	스위스, 호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칠레,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자발적 연금제도에 의한 비중이 높은 유형	4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영국

| 자료 : OECD,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국내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내실 강화가 필요

향후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 상승을 위해서는 정부 부채부담이 늘어나 재정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공적연금으로는 소득대체율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고소득자의 경우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OECD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사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향상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한 공적연금을 바탕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의 국가와 같은 자발적 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대체율 비중이 높은 유형(③번 유형)으로 진화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자발적 형태의 사적연금 비중을 늘려 연금제도 가입자 스스로의 노후소득 보장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DC형 제도 가입자 비중을 늘리고, 원금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연금시장의 성숙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대규모 사업장 위주의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 사업장으로의 퇴직연금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 가입률이 정체된 가장 큰 이유는 노후설계 및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개인 스스로 노후를 설계하여 연금을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연금제도 및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다양해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상품개발을 통해 개인들이 은퇴자산 포트폴리오를 꾸리는데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한편,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투자수단 다변화를 통해 연금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국내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해 세제혜택 등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연금시장 현황과 제도별 소득대체율

구분		보장주체	종류	적립금 규모(비중)	소득대체율		
					OECD 기준	보험연구원 기준	국제기구 권고기준
3층	사적연금	개인	연금저축, 세제 비적격연금	216.0조원(31.9%)	—	7.5%	10~20%
2층	사적연금	기업	퇴직연금, 퇴직보험·신탁	69.2조원(10.2%)	—	12.5%	30%
1층	공적연금	국가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392.0조원(58.9%)	42.1%	25~30%	30%

| 자료 : 금융위원회, OECD, 보험연구원

자영업자 K씨, 개인연금 중심 노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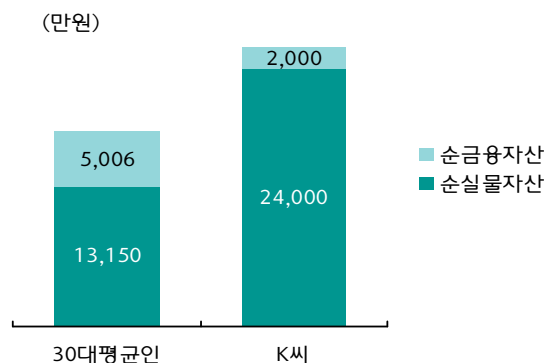
자영업자 K씨(33세)는 제과점 가맹점주로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약 4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9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까지 대신할 수 있도록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개인연금에 납입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가입한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상품에 매월 10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한 수익률(약 3%)을 감안할 경우 은퇴 후 매월 약 275.5만원의 개인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필요할 경우 미래 발생 소득으로 연금신탁에 추가납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K씨는 2.4억원의 아파트를 순실물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주택연금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상기의 정보를 종합할 때 매월 필요한 생활자금에서

30대 평균인과 K씨의 재무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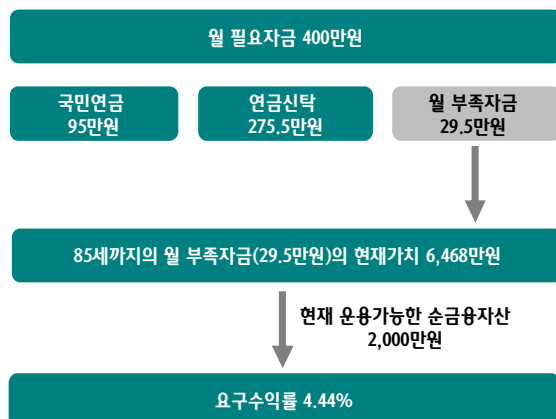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신탁 수령액을 차감한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29.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85세까지 필요한 금액을 은퇴 시점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약 6,468만원 정도이며 현 시점에서 보유 중인 순금융자산 2천만원으로 운용하여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4.44%의 요구수익률이 필요하다.

한편 K씨의 경우 현재 33세로 상기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은퇴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신탁 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K씨는 27세부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꾸준히 불입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K씨는 30대 평균인보다 순금융자산은 적으나 보다 많은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55.3만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충분한 노후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영업자 K씨, 안정추구형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이 적합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분류된다. 자영업자 K씨가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4.44%로 계산되었는데 이를 고려할 경우 K씨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9월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우선 해외채권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7월말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채권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안정추구형을 포함한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의 해외채권 비중을 전달 대비 2.5%p 축소하였다.

반면 해외주식은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경기개선세가 기대되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변동성 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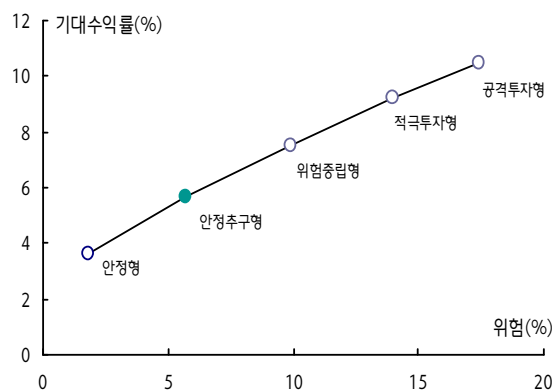
등 여전히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해외주식을 별도로 투자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내주식의 경우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금융시장 불안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다소 약화될 우려와 한국 경제의 양호한 펀드멘탈로 이들 국가들의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국내주식형의 비중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대신 룡숯 전략을 바탕으로 변동성 장세에서 양호한 성과가 예상되는 대안형 투자로서 중위험형 전략의 비중을 2.5%p 증가시켰다. 또한 국내외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관리를 위한 ELS 등의 대안형 투자는 병행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에 대한 비중을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국내주식	-	10.0	12.5	32.5	45.0
해외주식	-	-	15.0(+2.5)	27.0(+2.5)	27.5(+2.0)
원자재	-	-	-	-	-
중위험형	15.0	17.5(+2.5)	17.5	9.5	9.5
ELS/ELD	10.0	17.5	17.5	10.0	10.0
국내채권	40.0	22.5	12.5	5.0	2.5
해외채권	-	5.0(-2.5)	10.0(-2.5)	7.5(-2.5)	2.5
현금성	35.0	27.5	15.0	8.5(-2.0)	3.0(-2.0)

|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 상품은 변동성 장세에 대비한 상품중심 구성 중위험형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 소폭 확대

9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해외주식형을 제외한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등에 투자하며 대안형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였다.

국내주식형의 경우 성장형 포트폴리오 위주로 하되, 가치형 투자를 통하여 저평가 종목 발굴 및 주가상승을 추구하는 성장가치형 펀드인 하나UBS 승승장구코리아(주식)A와 저평가된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중형가치주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매매회전율이 낮아 장기 투자에 적합한 KB밸류포커스(주식)A에 일부 투자하였다.

국내채권형 투자는 기업 신용분석 및 저평가 종목 발굴을 통하여 확정금리형 상품 대비 추가수익을 추구하고 회사채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거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에 투자하였다.

해외채권형에는 미국 하이일드 채권 및 미달러표시 채권에 주로 투자하되 짧은 듀레이션 전략으로 낮은 변

동성을 추구하는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A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금리 상승 움직임을 감안하여 해외채권형 투자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축소하였다.

대신 대안투자로, 룡숫 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와 채권금리+ α 의 수익을 추구하여 변동성 장세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대하는 트러스트다이나믹코리아50(주식혼합)A의 비중을 증가시켜 중위험형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다. 또 다른 대안투자인 ELS등에 대한 투자 비중은 지난 달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금리 상승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감소시켰던 채권투자 비중을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MMF, MMDA, MMT 등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비중을 충분히 확보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K씨는 연금상품으로 은행연금신탁에 가입 중이며 매월 10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	비중
	국내주식	일반주식형	하나UBS 승승장구코리아(주식)A	하나UBS자산운용	5%
			KB밸류포커스(주식)A	KB운용자산	5%
	대안	중위험형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주식혼합)A	트러스톤자산운용	17.5%
		구조화	ELS(ELF/ELT)	-	17.5%
	국내채권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	흥국자산운용	22.5%
	해외채권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A	JP모간자산운용	5%
	현금성		MMF/MMDA/MMT	-	27.5%
	합계				100%
개인연금	연금신탁	주거예 은행 연금저축신탁 상품에 월 100만원씩 납입			

| 주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상기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 자료 : 하나대투증권 |

9월 주식시장은 출구전략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9월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FOMC 회의 및 독일총선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FOMC 회의에서는 출구전략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예상되며 독일 총선은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유로존 GDP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등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펀드멘탈이 취약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심리적 불안 현상은 출구전략 이슈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 경상수지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아시아 신흥국가보다 경제 펀드멘탈이 양호한 점에서 이들 국가와 같은 위기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도 다소 악화될 것으로

로 예상되어 변동성 또한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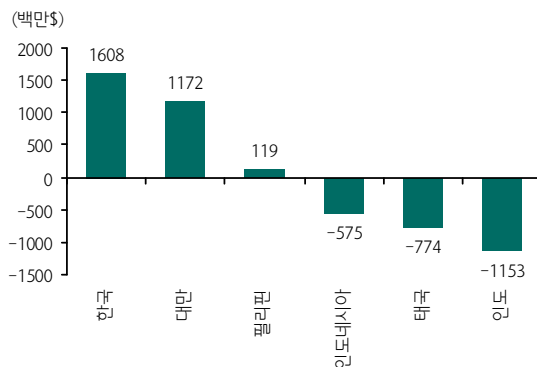
채권시장은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시켜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내외 경기개선 진행,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증가에 따라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수세 약화, 장기투자기관의 관망 등 채권 시장의 수급도 위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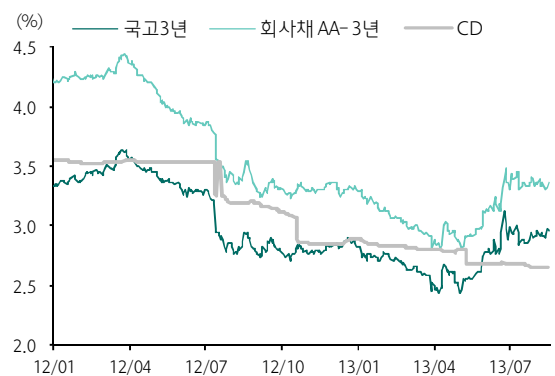
무엇보다 9월 채권시장은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9월 FOMC 전후로 금리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완화 축소 결정시 금리상승이 예상되고 이에 장기물의 상대적 약세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크레딧물의 금리 메리트 부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신흥 증시 외국인 순매수(7월 이후)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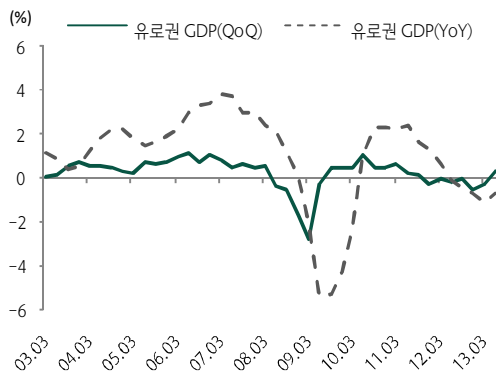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하나대투증권

해외시장은 이머징 시장 부진에 따른 선진시장과의 차별화 지속

미국시장은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GDP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나 7월 경기지표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였다.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으나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양적 완화 축소는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에 그칠 전망이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과 향후 경기 개선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유로존 경기기대지수, 2분기 GDP 등 양호한 지표로 하반기 유로존의 점진적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9월 22일 독일 총선에서도 메르켈 총리 체제가 이어질 전망으로 불확실성 제거 및 정책의 연속성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은 GDP 성장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경기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부채 증가로 재정건전성 논란에 따른 소비세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통화완화정책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GDP 성장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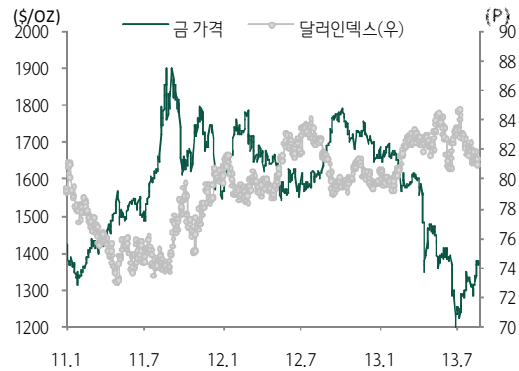
|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한편 중국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독립적인 통화정책 등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제한적인 경기부양책도 제시되고 있다.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며 자본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진한 경제지표와 대외적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시장 약세가 예상된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원자재 약세 전망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원자재 섹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관련한 수요 증가, 중동 정정 불안 등의 가격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축소와 非OPEC 지역의 공급 증가 전망 등으로 박스권 내의 제한적 움직임이 예상된다. 한편, 금은 주요 수요처인 인도정부의 금 수입관세 인상, 루피화 약세로 인도의 구매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달러화 강세 흐름은 금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 가격과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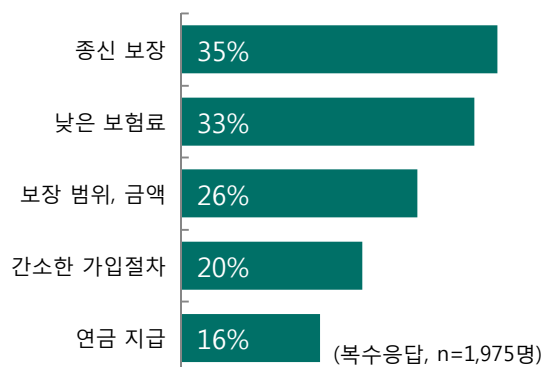
|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日, 민간 간병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민간 간병보험 가입자는 보장기간과 보험료를 고려하여 상품에 가입하며, 보험료 대비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가입 상품에 대한 불만이 높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65세 인구 약 3,000만명 중 공적 간병 관련 서비스를 받고있는 인구가 약 460만명에 이르고 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간병 관련 서비스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력이나 시설의 공급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간병과 관련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공공 간병보험 외에 민간 간병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나 민간 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높지 않다. 이에 Meiji Yasuda 보험 산하 생활복지연구소는 전국 20~79세의 성인남녀 4,041명을 대상으로 민간 간병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민간 간병보험 가입시 고려사항 상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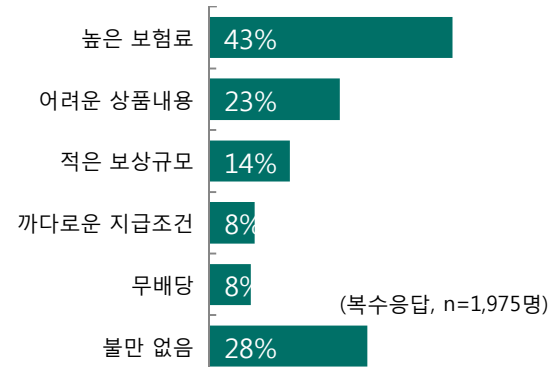
| 자료 : Meiji Yasuda 생활복지연구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간병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종신보장 여부’, ‘낮은 보험료’가 각각 35%, 33%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장 금액의 규모’ 26%, ‘간략한 가입절차’ 20%, ‘일시지급 외에 연금지급 여부’가 16% 순이었다. 복수응답으로 각각 응답 간 비중 차이에 큰 의미는 없으나 민간 간병보험 가입시 종신 보장 여부와 낮은 보험료를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간병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만이 없다’고 답한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여 간병보험에 대한 불만이 높은 수준이었다. 대표적인 불만 사항으로는 ‘높은 보험료’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복잡한 상품 구성’ 23%, ‘낮은 보상금액’ 14%, ‘엄격한 보상 조건’ 8%로 조사되었다.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불만의 원인을 가입시 보험료 수준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았다. 보험료 수준이 높아 불만을 가진 가입자 43% 중 약 72%가 가입시 보험료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시 보험료 수준을 중요한 지표로 평가하여 가입한 가입자 33% 중에서 현재 보험료 수준이 높아 불만인 비중은 37%에 불과한 반면, 보험료

가입한 민간 간병보험에 대한 불만사항



| 자료 : Meiji Yasuda 생활복지연구소 |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가입자 67% 중 47%가 보험료에 대해 불만을 보이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입시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향후 보험료 수준에 대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가입시 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가입했으나 현재 보험료가 높아 불만인 37%의 경우는 ① 보험료가 낮다고 판단하여 가입하였으나 다른 보험사 대비 높았거나 ② 가입 당시 보험료가 가장 낮은 상품에 가입하였으나 절대적인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개인인 간병보험 가입전 보험료 및 보장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 측에서도 가입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입시 보험료와 보장 내용에 대한 비교 평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입하고 있는 민간 간병보험의 보험료와 간병보상금, 보험금 등의 보상 수준에 대한 생각은 ‘적정하다’는 비중이 49%로 가장 높았다. 보상 수준이 ‘낮다’의 비중은 36%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고 답변한 비중이 56%로 두드러졌다.

두 항목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분석해 보면, 보상이 적고,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가입자는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가입하고 있는 간병

보험의 비용 대비 수익 측면에서 불만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혜택이나 해약환급금 등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기준 1인당 평균 요양비 및 요양급여액은 30만원 미만이나, 간병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인 치매의 경우 2010년 1인당 연간 진료비가 310만원에 이른다. 가정 내 요양이 어려워 외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매월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까이 자기 부담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적 간병보험으로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사회안정망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국민 스스로가 민간보험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 나갈 수밖에 없다. 70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에게서 발생하는 간병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民間介護保険に関する意識等調査結果概要”, 明治安田生活福祉研究所, 2013.8)

가입시 보험료 수준고려와 높은 보험료 불만 여부

		가입시 보험료 수준을 고려		
		한다	안 한다	합계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불만 여부	있다	237	621	858
		12%	31%	43%
	없다	409	708	1,117
		21%	36%	57%
	합계	646	1,329	1,975
		33%	67%	100%

| 자료 : Meiji Yasuda 생활복지연구소 |

보험료와 보상 수준에 대한 설문결과

		보험료 수준			
		높음	적정	낮음	합계
보상 수준	높음	263	26	10	299
		13 %	1 %	1 %	15 %
	적정	422	514	22	958
		21%	26 %	1 %	49 %
	낮음	415	226	77	718
		21 %	11 %	4 %	36 %
	합계	1,100	766	109	1,975
		56 %	39 %	6 %	100%

| 자료 : Meiji Yasuda 생활복지연구소 |

주: 보상수준은 간병보상금 및 보험금을 포함



고령화와 공적연금이 개인 저축에 미치는 영향

“두 요인 간 상호작용 결과 공적연금의
구축효과*보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 불안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개인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지난 8월 “2013년 보험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고령화 및 공적연금이 사적저축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저축결정에 서로 반대 작용하는 고령화와 공적연금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개인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의 구축효과보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 불안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개인 저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저축의 동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한 예비적 동기로서 저축을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생애주기적 동기로서 은퇴를 대비해 미리 저축을 하고 은퇴 후 이를 소비하는 위한 것이다. 고령화가 개인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예비적 저축 동기 모형으로 설명되며, 공적연금이 개인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생애주기 동기 모형과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하여 개인 저축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적연금은 국가마다 설계 방식(적립방식, 부과방식 등)이 매우 다른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래 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이 강하여 개인 저축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어진 경제적 상황과 연금제도의 발전도에 따라 고령화와 공적연금이

개인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공적연금 간의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개인 저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도시)가계조사 데이터(raw data)를 사용하였으며, 1998년부터 총 14년간에 대해 고령화 관련 변수, 공적연금 수급 관련 변수, 인적 관련 변수 등이 저축금액 및 저축률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관련 변수들은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연금 관련 변수들은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와 공적연금 간의 상충관계를 직접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의 저축감소효과보다 고령화 요인의 저축증가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또한 성숙기를 향해 달려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요인의 변화는 개인 저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꾸준한 논쟁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고령화를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도입되어 공적저축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때 두 요소는 단순히 저축에 대한 배타적 요소가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상호 보완적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불안요인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완화시켜주는 조치로서 공적연금으로 인한 개인 저축의 일부 구축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회비용의 적정성 정도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고령화 및 공적연금이 사적저축에 미치는 효과”, 2013년 보험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3.8)

| 주 : 구축효과는 경제학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투자할 경우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줄어들어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의 증가가 개인저축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

“

금감원,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현황 및 지급방안 추진

”

“부정확한 고객 정보 등으로 미수령 계좌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금 미수령 계좌 안내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금융저축부문 검사과정에서 연금 미수령 계좌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연금저축상품을 판매중인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미수령 연금 실태파악 및 지급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3년 4월말 기준 연금저축상품의 연금지급일이 도래한 계좌는 총 33만건(적립금 4.7조원)이며, 이 중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는 14만 8천건으로 4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수령 계좌 중 은행이 12만 7천건으로 전체의 8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 2만건, 증권 223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연금 미수령 계좌 중 적립금 1천만원 이상 계좌는 1만 8천건

(12.4%)이며 120만원미만의 소액 계좌는 12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연금저축의 특성 상 장기 계약(최소 10년 이상)으로 인해 부정확한 고객정보로 고객이 연금 수령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둘째, 금융회사의 연금지급가능일 이후 타 금융거래 과정에서 연금 지급에 대한 시스템적인 안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향후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째, 연금 지급 대상자의 대출, 예·적금 등의 금융거래 발생 시 미수령 계좌 보유 사실을 인지하는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내부통제 조직에 의한 미지급 사유, 연금 미지급 실태 등에 대한 자체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셋째, 금융회사별 연금 미수령 계좌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축 이행 실적과 이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며, 넷째, 미수령 연금 계좌에 대한 담당 영업점포별 홍보 역량 강화 및 은행연합회 등 협회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현황 및 지급방안 추진”, 금융감독원, 2013.8)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지급기일 도래				
	계좌	적립금	미수령 계좌		
			계좌수	적립금	미수령 연금
은행	177,157	12,628	127,431	2,043	895
보험	139,867	31,140	20,277	3,256	638
증권	13,347	3,386	223	24	4
합계	330,371	47,154	147,931	5,323	1,537
舊개인 연금	295,771	40,135	142,388	4,641	1,537
新개인 연금	34,600	7,019	5,543	682	-

| 주 : 2013년 4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

자산구분	은행	보험	증권	전체	(비중)
연락두절 등	120,323	18,118	167	138,608	93.7
고객의 지급보류 요청	324	497	3	824	0.6
압류 등 지급 제한	6,784	1,662	53	8,499	5.7
합계	127,431	20,277	223	147,931	100.0

| 자료 : 금융감독원

변액연금

2013년 새롭게 변경된 연금저축상품

비과세 혜택을 보유한 투자형 보험상품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금상품은 수백 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다양한 연금상품은 세제 적용의 차이와 자산운용 방식에 따라 세제적격 연금저축,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변액연금상품은 보험료 납입 당시에 소득공제는 적용 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며,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투자형 보험 상품이다.

즉,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성고가 좋을 경우 높은 연금 지급액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일반 연금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 지급액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펀드와는 달리 보험 상품인 만큼 다양한 최

저보증을 통해 최소한의 보장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변액연금 상품에 부가되는 최저보증옵션은 보험사가 보증해주는 대상에 따라 최저적립금보증옵션(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최저수입보증(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 최저인출금보증(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연금지급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흐름을 보증하는 최저수입보증옵션, 자산운용수익률에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특정 기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최저인출금보증 상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해주는 대표적인 은퇴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의 지속적인 수익률 제고 노력 필요

변액연금은 국내에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펀드 시장의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가입이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난 해 주식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수익률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신규 가입이 주춤한 상태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를 계기로 상품

일반연금과 변액연금 비교

구분	세제적격연금 연금저축	세제비적격연금	
		일반연금	변액연금
이자소득세	과세	비과세	
소득공제	소득공제(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x	
연금소득세	과세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비과세	
적용이율	공시이율(변동금리)	공시이율(변동금리)	실적배당

수익률 공시 강화, 사업비 후취방식의 상품개발 검토 등 각종 개선이 이루어지는 추세인 만큼 변액연금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특징점을 잘 파악하여 노후 대비 상품으로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단, 변액연금 가입 시에는 우선 다양하고 우량한 펀드로 구성된 변액연금을 선택하고 가입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펀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수익률을 관리하는 등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무배당 멤버원 변액연금보험



보험사

하나생명

판매사

하나은행

판매사 등록번호 : 2003091002

상품의 특징

무배당 멤버원변액연금보험

-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투자의 성과가 계약자 적립금(연금액)에 반영되는 실적배당형 연금상품으로 실세금리의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투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펀드선택 가능**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회사가 설정한 다양한 펀드[채권형(5명), 인덱스혼합형(5명), 주식혼합형(5명), 인덱스성장형(5명), 안정성장형(5명), 안정성장형 II(5명), 글로벌혼합형(5명), 이머징브라크주식성장형(5명)]로 분산투입이 가능합니다.
- 투자실적 악화시에도 고객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최저보증제도**
사망보험금과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납입보험료의 100%를 최저보증 해 드림으로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 되지 않습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6%
- 고객의 투자성향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최적의 투자시스템**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된 계약자 적립금이 계약재결시 또는 변경시 선택한 펀드비용에 따라 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되며, 펀드변경(수수료 없음) 또한 연 12회 이내로 가능하여 중장기 투자 고객의 투자성향을 유연하게 반영합니다.
- 다양한 연금설계 가능**
최초가입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 가능하지만 연금개시 이전까지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 등의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로 변경의 자유로움을 드립니다.
- 비과세 혜택**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계약할인 혜택(적립형에 한함)**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0.5%, 기본보험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0원 +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1.4%),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000원 +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부분의 1.6%), 기본보험료 200만원 이상 24,000원 + 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부분의 2.0%와 "기본보험료의 1.5%" 중 적은 금액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 이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통보험을 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최저연금적립금을 최저보증하나, 연금개시 이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시 전화 : 1588-0037)
- ※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 및 운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선택하신 펀드, 운용수수료 등에 관하여) 운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

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

2013.8.22일 헤럴드 경제지에는 “도봉구, ‘프프가 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 질환 주의하세요!”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몇 일 남지 않았다.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씨를 즐기기 위해 야유회나 등산은 물론, 추석에 조상을 찾아 뵙기 위해 벌초와 같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 매년 이맘때인 9~11월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 환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감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발생 현황

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프가 무시증이다. 이는 03년 1,415명에 비해 지난 11년 5,151명으로 약 4배 가량 증가하여 발생하고 있다.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시·군·구가 03년 44개 지역에서 11년 147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산악지역(강원, 경북북부 등)보다 평야지역(전남북, 충남북, 경남과

경북 남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최근 캠핑의 유행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진드기 및 설치류 등과의 접촉빈도 증가 또한 환자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질환은 3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별 감염경로 및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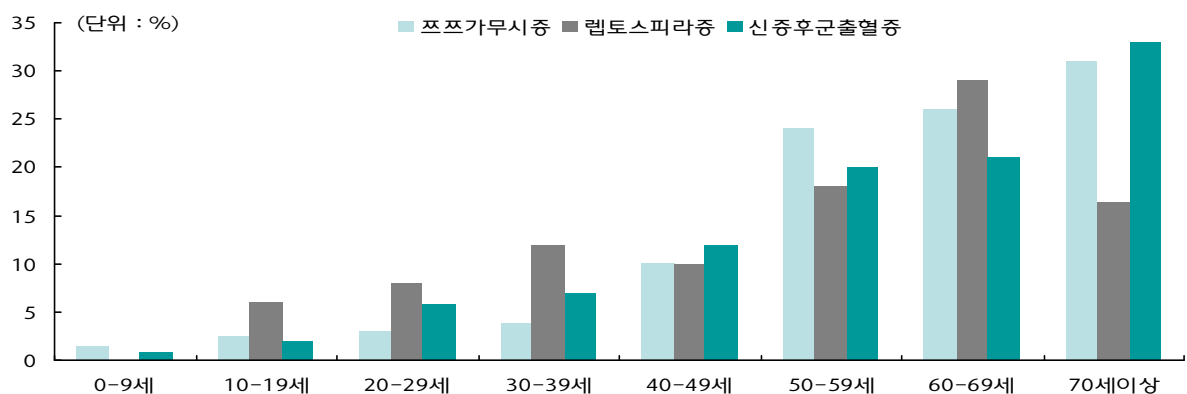
①프프가 무시증

관목 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된다. 약 2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고열, 오한, 두통, 림프절 비대, 피부발진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폐렴, 심근염, 뇌수막염 등으로 진행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렙토스피라증

들쥐, 족제비, 소, 개 등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배출된 후 사람이 균으로 오염된 젖은 풀이나, 흙, 물 등과 접촉할 때 점막이나 미세한 상처가 있는 피부를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연령별 현황(2011년)



자료 : 보건복지부

5~7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전신에 혈관염 증상이 나타나면서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발생한다. 심할 경우 폐출혈, 뇌막염, 간기능 장애, 신장기능 장애 등이 나타나면서 사망할 수 있다.

③신증후군출혈열

일명 ‘유행성출혈열’ 이라고도 불리며, 바이러스의 일종인 한탄바이러스 또는 서울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평균 2~3주 정도 잠복기를 거쳐 초기 감기와 비슷하게 시작해 발열, 출혈경향, 신장기능 이상 등으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3개 감염병 모두 감염 초기에는 야외활동 후 발열, 오한, 두통이 있어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법

①쯔쯔가무시증 예방법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 것
- 휴식 및 새참 먹을 땀 뚫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릴 것
-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 밤따기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양말을 착용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 세탁할 것

②렙토스피라증 예방법

-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는 장화 및 고무장갑을 꼭 착용할 것
- 태풍, 홍수 뒤 버 세우기 작업 시에는 장화 및 고무장갑을 착용할 것

③신증후군출혈열

- 들쥐의 똥, 오줌이 배설된 풀숲(오염지역)에서 휴식이나 야영하지 말 것
- 주변에 불필요한 풀숲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것
- 풀밭이나 들에서 야영,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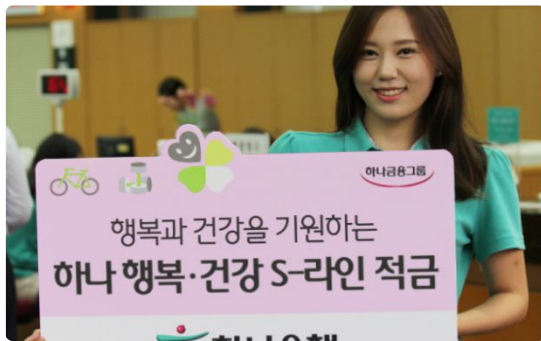
(하나은행 행복디자인 센터 )

가을철 발열성 질환 증상 및 특징

구분	증상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정의	<i>Orientia tsutsugamushi</i>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질환	병원성 <i>Leptospira</i>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질환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 등에 의한 급성발열성질환
매개체 및 감염원	털진드기와 진드기 유충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 흙	설치류(등줄쥐, 집쥐)
잠복기	8~11일	5~7일	7~21일
임상증상	가피형성, 고열, 오한, 심한두통, 발진, 구토, 복통 등	가벼운 감기증상부터 치명적인 웨일씨병까지 다양함	발열기, 저혈압기, 핏노기, 이노기, 회복기의 5단계
치명률	30%	적절한 치료 X 20~30%	2~7%
전파경로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	설치류의 타액, 소변, 분변이 공기 중 건조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

하나은행, 행복·건강 S라인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건강 S라인 적금』을 23일부터 판매한다. 동 상품은 건강 생활 서약서 작성시 연 0.2%p, 건강 생활 실천에 따른 연 0.2%p, 봉사활동 확인서 등 나눔 실천에 따른 우대 금리 연 0.2%p를 포함하여 3년 만기 기준 최고 연 3.7%까지 받을 수 있다.



하나대투증권, YWCA와 여성인권운동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하나대투증권은 기독교 시민여성운동 단체인 서울 YWCA와 『하나대투증권 기부서비스』를 통해 여성 인권 운동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을 통해 재단에 후원을 원하는 고객의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상품보수 및 수수료의 일부를 고객의 이름으로 서울 YWCA에 기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환은행, '외환카드가 드리는 오색찬란 한가위 이벤트' 진행

외환은행은 한가위를 맞아 『외환카드가 드리는 오색찬란 한가위 이벤트』를 9월 23일까지 진행한다. 동 이벤트는 추석연휴기간간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할인 혜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Yes포인트 및 주유권 제공, 캘리포니아피자치킨 할인 혜택, 대형 할인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혜택 및 무이자할부 등을 제공한다.



하나SK카드, 행복 한가위 대잔치

하나SK카드는 한가위를 맞아 풍성한 혜택을 드리는 『행복 한가위 대잔치』 이벤트를 실시한다. 추석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9월 한달 간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할인혜택 및 모바일주유권 등 다양한 상품권도 제공하며, 모바일 카드 결제 시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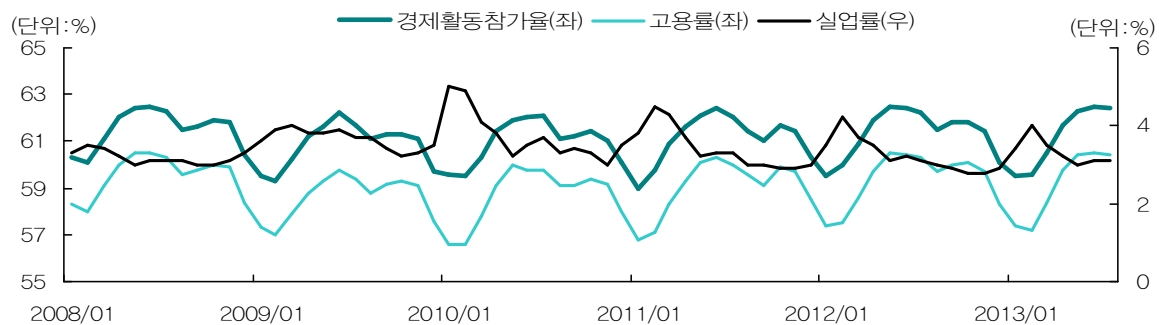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1~7	61.2	7.8	61.6	75.1	79.8	74.1	38.5	59.2	6.9	56.7	72.8	78.1	72.6	37.6
2013.6	62.5	6.9	62.4	75.6	80.7	75.7	41.7	60.5	6.2	57.6	73.4	79.0	74.4	40.9
2013.7	62.4	9.4	62.6	75.5	80.5	75.3	41.1	60.4	8.0	57.8	73.2	78.8	73.8	40.6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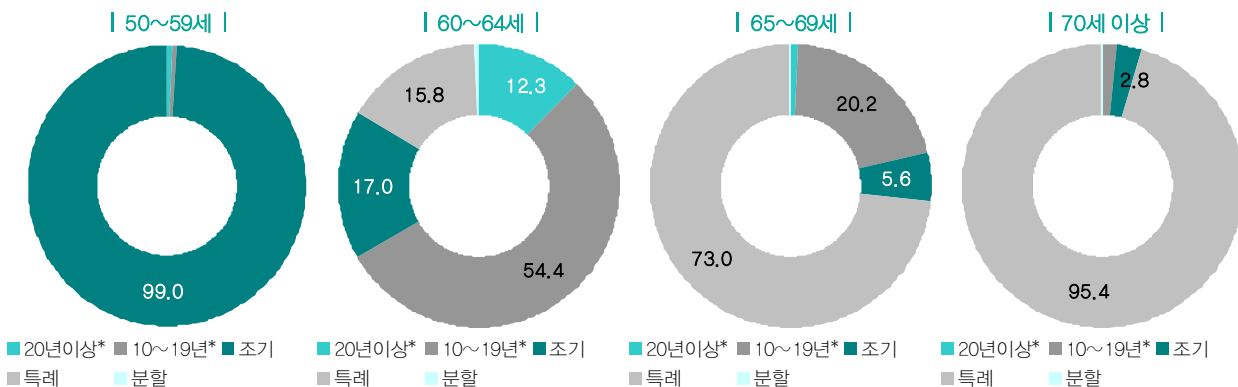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5	20,419,405	1,247,734	11,715,897	8,411,679	1,932,515	6,479,164	191,566	100,263
2013.6	20,457,340	1,258,153	11,743,442	8,422,611	1,937,783	6,484,828	189,319	101,968

2. 2013년 6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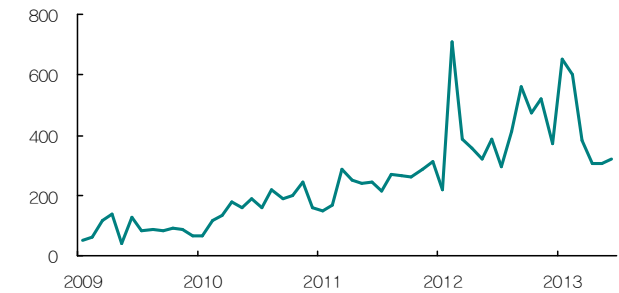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
2010.12	2,016	30,361
2011.12	2,936	41,000
2012.12	5,013	69,006
2013.1~6	2,567	31,216
2013.5	305	3,082
2013.6	321	3,598

(단위:명)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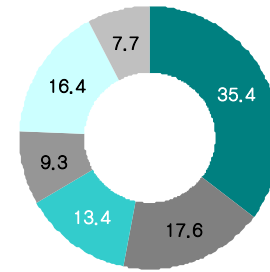


2. 2013년 6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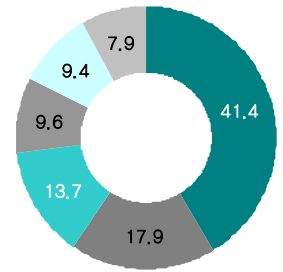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273	79,817
신한은행	643	34,426
우리은행	481	26,483
하나은행	333	18,438
농협	590	18,145
기타	278	15,303
합계	3,598	192,613

보증공급액 기준



잔액 기준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기타 ■ 농협 ■ 기타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3년 6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497,189	5,119,103	1,284,475	85,596	1,248,628	82,561	99,279	46,162
생명보험	3,011,926	2,725,473	175,450	3,596	213,999	71,772	16,336	1,803
손해보험	999,942	941,499	54,636	267	23,090	1,930	17,216	230
증권	2,588,301	2,342,889	134,151	336	120,409	2,937	6,362	195
근로공단	83,493	0	81,453	477	23,082	-	22,855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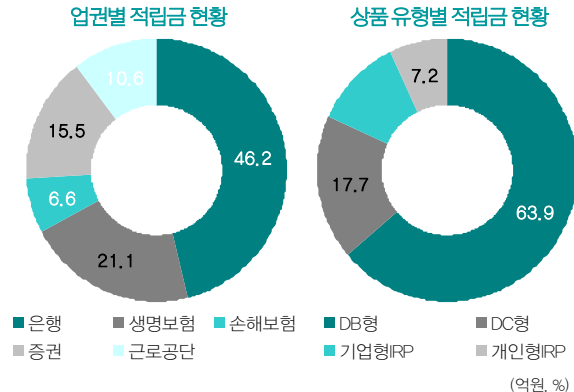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10	189,644	64,139	33.8	4,142	2.2	92,215	48.6	29,148	15.4
2012.11	194,209	65,531	33.7	4,129	2.1	95,317	49.1	29,232	15.1
2012.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3	215,962	70,868	32.8	4,924	2.3	109,820	50.8	30,350	14.1
2013.6	226,994	73,301	32.3	5,300	2.3	117,808	51.9	30,585	13.5

3. 2013년 6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785,962	502,123	139,024	88,081	56,734
은행	362,986	225,562	91,463	6,428	39,533
생명보험	166,176	139,769	18,936	170	7,301
손해보험	51,904	45,630	4,373	15	1,886
증권	121,813	91,162	22,630	15	8,006
근로공단	83,083	0	1,622	81,453	8



4. 2013년 6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구분		DB형		DB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예적금	253,895	50.6	84,112	60.5	5,806	87.4	35,432	62.4	379,236	53.8
	금리확정형보험	75,816	35.0	14,009	10.1	121	1.8	7,205	12.7	97,151	28.0
	금리연동형보험	18,789	3.7	4,756	3.4	54	0.8	1,254	2.2	24,853	3.5
	국채	491	0.1	1,110	0.8	0	0.0	1,500	2.6	3,101	0.4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보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S	36,276	7.2	1,871	1.3	0	0.0	2,205	4.0	40,443	5.7
	RP	7,927	1.6	1,671	1.2	1	0.0	854	1.5	10,453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46	0.1	0	0.0	36	0.1	181	0.0
	기타	0	0.0	1	0.0	0	0.0	3	0.0	5	0.0
원리금보장형 소계		493,185	98.2	107,677	77.5	5,982	90.1	48,579	85.6	655,422	93.0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 보험	162	0.0	1,508	1.1	9	0.1	348	0.6	2,027	0.3
	주식형	784	0.2	17	0.0	0	0.0	23	0.0	824	0.1
	혼합형	721	0.1	8,403	6.0	39	0.6	1,035	1.8	10,198	1.4
	채권형	3,374	0.7	19,086	13.7	568	8.6	3,006	5.3	26,034	3.7
	채간접	3	0.0	182	0.1	0	0.0	28	0.1	214	0.0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987	0.2	0	0.0	0	0.0	0	0.0	987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6,032	1.2	29,196	21.0	616	9.3	4,440	7.8	40,283	5.7
	직접투자	311	0.1	106	0.1	0	0.0	299	0.5	717	0.1
	실적배당 소계	6,343	1.3	29,302	21.1	616	9.3	4,739	8.4	41,000	5.8
대기성 자금		2,596	0.5	2,045	1.5	44	0.7	3,418	6.0	8,103	1.2
총계		502,124	100.0	139,023	100.0	6,642	100.0	56,737	100.0	704,526	100.0

5. 2013년 6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341,320	94.0	158,498	95.4	50,605	97.5	103,386	84.9	1,614	98.2
실적배당형	16,491	4.5	7,042	4.2	1,288	2.5	16,170	13.3	9	0.5
기타	5,178	1.4	634	0.4	5	0.0	2,265	1.9	21	1.3
합계	362,989	100.0	166,175	100.0	51,898	100.0	121,821	100.0	1,643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교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